

의견서

- 서울중앙지검 2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과제에 관한 의견 -

재단법인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모금행위로부터 촉발된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합니다)은 특검수사 종료와 지난 2017. 3. 10.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전대통령”이라 합니다)의 탄핵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사건의 본질이 과거 전두환 전대통령의 ‘일해재단사건’과 같은 정경유착에 있음을 주장하며 박대통령 주도하에 이루어진 여러 범행들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집중 조명해야 할 5대 수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의견을 개진하오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적극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순 서〉	
I.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죄, 군사기밀누설죄, 청와대 공작정치 수사	2
II. 삼성그룹 이재용 외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등 수사	8
III.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수사의 필요성과 의미	11
IV. 최순실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행위 수사촉구	15
V. 우병우 전민정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	16
VI. 결 론	18

I.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죄, 군사기밀누설죄, 청와대 공작정치 수사

1. 박전대통령이 받아야 할 수사과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제1차 수사에서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된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하여 재벌기업들을 협박하여 미르재단, K-Sports 재단, 최순실 등에게 자금을 공여하도록 한 직권남용죄와 청와대 행정관의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대한 공범으로 의율하였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를 통하여 재벌들이 단순히 박전대통령에 대해 협박을 받아 자금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각 재벌기업들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법제도의 변경이나 구체적 지원행정을 요구하며 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만이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제1차 수사에서는 기밀누설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공무상기밀누설죄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누설된 기밀의 내용에는 군사상,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 이 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김영한 전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김기춘 전비서실장의 문화계, 언론,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김기춘과 조윤선 등의 직권남용 부분만이 수사되었으나, 위 업무일지에는 VIP라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찰이나 공작정치를 지시한 부분도 있어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작정치를 지휘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는 1) 재벌들의 뇌물죄에 대한 공범, 2) 공무상기밀누설만이 아니라 군사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3)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하며, 이미 청와대에서부터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폐기하고 특검의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의 혐의가 뚜렷하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2. 박전대통령은 최순실과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을 지배·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은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 등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최서원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 이사를 ‘이XX’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5. 10. 21.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형수, 이사는 장XX, 이XX, 송XX, 조XX, 김XX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성한으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최상목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015.10.26. 서울 서초구 XXXX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이XX 등 전경련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차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또한 이재용 등에 대한 공소장에는 재단설립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습니다.

이재용이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순실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최순실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대통령은 2016. 2. 15. 소위 ‘안가’에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에 협조해 주어 고맙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포함하여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하여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러한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상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미르재단 정관의 성안과 임원 선임은 박전대통령의 지시·승인 아래 최순실이 실무를 진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박전대통령-안종범(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경제금융비서관)의 지시 내용에 따라 전경련이 설립서류(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등) 작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으며, 출연기업들은 전경련이 준비한 서류들에 날인함으로써 정관 작성 등 법인설립행위를 하였습니다. 즉, 재단법인의 경우 주로 출연자들이 해당 재단을 경영·지배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은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을 받아 미르, 케이스포츠 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들을 장악·지배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립 후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한 재단 인사와 운영의 전횡, 대통령의 국외순방등과 관련하여 두 재단이 협력사업의 주체로 등장하는 사정(한불 융합요리 시식행사, 아프리카 K-meal 사업, 이란 K-타워 건립사업, 태권도 시범단(K스피릿) 공연 등), 대통령 지원 하에 더블루케이를 통해 롯데, 포스코 등을 상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점도 대통령의 재단 지배를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으로 올 것이라고 들었다”는 케이스포츠 재단 박현영 과장의 국정조사 증언까지 감

안하면 이는 자명합니다.¹⁾

다만, 박전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무엇을 뇌물로 받은 것인가에 관해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견해(제3자뇌물수수)와 재단 그 자체가 뇌물(단순뇌물)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판례가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며 그 대상을 넓게 보고 있는 이상 어느 경우이든 박전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에 큰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전대통령은 이전 정권에도 유사한 형태의 모금행위가 있었음을 강변하기도 하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행위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기부금 또는 출연금 모금 사례와 달리, 정책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특정인이 재단을 사유화하여 그 운영을 전횡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재단의 정책상 필요성과 사업 계획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심의 및 입안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출연금 할당 및 정관 작성 등 설립행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라도 기업들의 자발적 의사와 협조를 얻는 대신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립과정은 물론 설립 후에도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들을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모금행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기부금 등 모금 사례들과는 뚜렷이 구별됩니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는 박전대통령의 변명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자 거짓논리를 만들어 낸 것에 다를 아닙니다.

3.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수사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

거나 수집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최순실은 박전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를 받아보았고, 그 안에는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군사기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에는 이러한 범행과 관련한 공소사실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에 관한 최순실 및 박전대통령과의 혐의유무 및 공모관계를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직권남용죄 수사

김영한 전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김기춘 전비서실장의 문화계, 언론, 법조계, 종교계, 교육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공작정치에 대해서는 김기춘과 조윤선 등의 직권남용 부분만이 수사되었으나, 위 업무일지에는 VIP라고 하여 대통령이 직접 사찰이나 공작정치를 지시한 부분도 있어 박전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작정치를 지휘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구속수사의 필요성

가. 중대 범죄혐의의 부인 및 증거의 조직적 인멸·조작행위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염려 혹은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구속사유 심사를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우선 박전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뇌물죄로서 그 액수의 과다로 인

1) 2016. 12. 26.자 JTBC '퇴임 대비용' 증언 파장...뇌물죄 수사 단서 될 수도

해 가중처벌이 예상됩니다. 범죄혐의는 비단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밀누설, 최순실 모녀 지원을 위한 여러 직권남용행위, 불법의료행위 등 국정농단과 관련한 여러 범행들의 정점에 박전대통령이 있으며(범죄의 중대성), 관련자들 대부분이 구속기소될 정도로 박전대통령의 혐의는 상당합니다(혐의의 상당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전대통령은 이 사건 발생초기부터 거짓으로 일관하였고, 최순실, 안종범 등과 주요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전경련 이승철에게는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조작까지 하는 등 증거인멸 ‘염려’ 수준이 아니라 증거를 실제로 인멸하고 있습니다.

나.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안종범, 문형표 등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 고려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김종 등이, 특검에 의해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문형표 등 여느 때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위 공직자나 재벌 총수가 각 구속기소되었으며, 박전대통령은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음이 여러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비록 헌법은 불구속수사를 천명하고 있으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공작정치, 비선의료 범행 등 박전대통령은 바로 그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하는데 앞장선 장본인이자 시작과 끝이라는 점에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이 행한 여러 수사성과에 비추어, 박전대통령의 뇌물혐의와 국정농단(헌법재판소는, 박전대통령의 최순실 및 그 측근에 대한 지원행위가 사익을 취하기 위한 위법한 행위이고, 문건유출행위도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소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작정치, 비선의료 등의 공모관계는 분명합니다. 또 박전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혐의가 상당하고, 일관하여 범의를 부인하며 증거를 조작·인멸한 흔적이 있으며, 피해자나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가 행해

질 우려와 김기춘, 이재용, 최순실 등 공모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속수사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II. 삼성그룹 이재용 외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등 수사

1. 여러 재벌들이 독대 당시 제시했던 부정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입니다.

특검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에 대하여,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각종 지원행위 외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제공된 출연금 역시도 삼성이 당면했던 민원(경영권세습)과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위 이재용이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며, 국회에서의 증언이 허위로 행해진 점 등을 들어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하여 2015. 07. 및 2016. 02.과 03. 박전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민원을 제시했던 다른 재벌들(SK, 롯데, CJ, LG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제한된 수사기간과 인력으로 인하여 개시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촛불민심의 중심추를 이루었던 점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출연행위와 각 재벌들의 민원해결 사이의 대가관계가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그룹 이재용 외에 위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등 수사 역시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재벌들의 뇌물공여 당시의 재벌이 당면했던 구체적인 민원성 현안과 박전대통령의 개입정황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01] 단독면담 전 제출한 주요현안과 대통령 말씀자료

2015. 07.	주요현안	대통령 말씀자료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 - 친환경차 및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 노동5법·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조속한 통과 ²⁾	- 2015. 10. '시정 연설' 발표 (i) 경제 활성화법 처리 :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ii)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iii)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 2016. 2. '대국민 담화문' 발표(노동개혁법 처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CJ그룹 (손경식)	-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 - 지주회사의 손자·증손회사 지분소유 규제 완화 ³⁾	- 개정법안 국회 통과 설득 - CJ도 언론과 국민에 적극 알려 공감대 확산
SK그룹 (김창근/최태원)	-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 ⁴⁾	-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 세법이 개정된 데 기인 - (2016년) 3월경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
LG그룹 (구본무)	- 제주도 에너지 신사업에 한 전 참여 요청.	- 한전이 제주도 에너지 신사업에 최대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음
롯데그룹 (신동빈)	- 아울렛 의무휴업 확대 반대 -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제로 변경 - 그밖에 신동빈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 대상,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수사 대상, 세무 조사 예정 등 수사 관련 현 안	- 아울렛 의무휴업 도입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신중히 접근해야 - 면세점 특허 상실은 야당 주도로 관세법이 개정된 데 기인 - (2016년) 3월경 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

박전대통령과 최순실, 안중범은 공모하여, 각 그룹별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거나,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거나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 혹은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이재용(삼성그룹),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손경식(CJ그룹), 최태원(SK그룹), 구본무(LG그룹) 등 각 그룹의 회장들로부터 ①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에 함께 486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② 2016. 02.경부터 2016. 08.경까지 위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함께 288억 원 상당의 출연금을, 각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위 정몽구 등 각 그룹의 회장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습니다.

또한, 위 정몽구를 비롯한 각 그룹의 회장들은 각 그룹의 경영 및 자금지출 등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들인바, 각 그룹 내 각 기업의 자산이 불법적인 뇌물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게 위 각 출연금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박전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각 출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각 기업들에게 각 출연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3. 소 결

이 사건은 공론의 장에서 공개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채택되어야 할 경제정책이 정경유착의 음습한 통로를 통해 채택된 결과 경제질서의 왜곡은 물론 법과 정의를 실종시켰으며, 더 나아가 국가정책의 신뢰 자체를 상실시켜 우리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확산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검찰과 특검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자,

2. 재벌들의 뇌물공여 행위 및 회사 자금 유용행위에 대한 수사

2) 2016. 12. 21.자 미디어오늘 특검 향한 목소리 "삼성 뒤에 숨은 현대차 정몽구도 구속"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094#>

3) 2017. 01. 04.자 한겨레 [단독] 박대통령 한화 독대 말씀자료 "면세점 황금티켓 맞으니 재단지원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348388&sid1=001>

4) 2016. 11. 16.자 중앙일보 [단독] 박대통령, 총수 독대 때 "민원성 현안"도 들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877985>

자신들이 청와대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여자들의 의사형성의 자유가 완전히 제압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기업들이 직부관련-대가성을 인식하고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위 재벌들을 뇌물공여 및 공여된 자금이 회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III.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수사의 필요성과 의미

1. 고 김영한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조운선 등을 구속 기소하였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고 김영한 업무수첩을 통해 청와대가 ① 언론에 대한 사찰과 통제(KBS 이사회 사장 임명개입, 정윤희 문건 관련 세계일보 탄압 등), ② 사법부 사찰과 공작(상고법원 설치 등 현안을 이용한 법원 길들이기, 판사들 성향 파악 등), ③ 국정원의 장·차관 공공기관장 및 정치·종교·민간인 사찰, ④ 교육계 사찰과 공작(전교조 지지 교육감 사찰, 전교조 동향파악 등)을 주도하고, ⑤ ‘우병우 팀’을 동원하여 어용단체의 고발을 이끌어낸 의혹 등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공작정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개입한 분야, 구체적 의혹 그에 따른 적용협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02]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구체적 의혹과 적용협의

개입분야	구체적 의혹	적용협의
언론에 대한 사찰과 부당통제	○ KBS 이사회 사장 임명에 개입	- 이사회 이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죄 혐의
	○ 세계일보 ‘정윤희 문건 보도’와 관련한 공작 및 일요신문과 시사저널 등 정부비판 보도에 대한 처리	- 청와대는 문건의 내용을 전면 부인,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문건의 유출만 수사하여 조응천과 박관천을 공부산기밀누설죄로 고소, 통일교 계열사 세무조사
	○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보도와 산케이 지국장 기소 공작	- 산케이신문 처리를 지시하여 언론의 자유 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	- 상고법원 설치 등 현안을 이용한 법원 길들이기,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고위직에 대한 사찰,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장청구 등에 활용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배제 등 사법권독립의 침해 혐의
	○ 재판결과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관련 여론전 교사 및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사항 쟁점 미리 파악 등 직권남용 및 삼권분립, 법치주의원칙 훼손 등 혐의
	○ 대한변협에 대한 사찰과 공작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 개입하거나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사찰, 통합진보당 해산과 세월호사건 변호사들의 성향 파악, 보수 변호사단체와 커넥션 이용 등 직권남용 및 삼권분립, 법치주의원칙 훼손 등 혐의

	○ 민변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에서 지휘	- 민변 집행부에 대한 사찰 및 민변 변호사의 수임내역과 민변자금 등을 사찰, 일부 변호사 징계공작 등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 혐의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 국정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정치인,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 사찰	- 총리실 TF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구성해 사찰하도록 지시,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도 사찰과 공작에 동원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위반 및 제18조, 제19조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교육계 사찰과 공작	○ 전교조 지지 교육감에 대한 사찰과 공작	- 진보교육감의 활동을 통제할 시스템 구축 시도, 인사에 대한 사찰, 정치적 공격 지시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 전교조 법외노조화	- 전교조 동향파악, 교육현장에서 이념대결 조장, 반합법, 비합법적인 방법 동원하여 전교조에 대응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
문화계 사찰과 공작(※ 유일하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건만 수사되어 관련자 구속)	○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에 대한 수정압력 및 광주비엔날레 전시 무산	- 행사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방해, 청와대의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죄 혐의
	○ 영화 다이빙벨 방영 차단과 처벌	- 청와대에서 영화 방영, 탄압을 직간접적으로 지시 - 영화제작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활동을 축소 은폐하려는 청와대의 개입과 공	○ 카카오톡, 아고라 등에 대한 감청 협조 등 사찰과 공작 및 인터넷 비판글에 대한 검열강화	- 극우단체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반대운동 및 카카오톡 유포를 활용하도록 지시하여 직권남용죄 혐의
	○ 세월호 7시간 비공개 결정	- 형법 제141조 공공서류무효죄 혐의

작		의
	○ 세월호 관련 감사원 감사 개입 정황	- 감사원 독립을 침해하여 직권남용죄 혐의

2.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수사의 필요성과 의미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여 법을 우습게 알고,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남을 사찰하고 불법적인 공작을 하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헌법 침해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바, 청와대 공작정치와 관련한 수사는 한 치의 허점도 없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상과 이데올로기 탄압 및 편향된 가치관의 세뇌라는 유신시대의 폐습이 부활함에 따라 자체 검열 등 양심과 사상 및 예술의 창작행위가 위축되고, 관제체모와 여론왜곡의 심화현상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는 등 정권 내내 공작정치의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었으며, 급기야 공작정치의 목적이자 과정인 개인과 정권에 대한 숭배는 이제 도를 넘어 박전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한정된 범위에 머물지 말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론,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공작부분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 합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언론계나 고위 공직자,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에 있어서는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도 있으므로,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점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IV. 최순실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행위 수사촉구

1. 특검수사에서 드러나 자금세탁 혐의

특검은 최순실의 자금세탁에 관한 정황 중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정유라의 승마 지원과 관련한 금원을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함께 5,979,686,유로(77억 9,735만 원)에 대한 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독일에서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독일검찰의 수사착수

그런데 최순실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독일에 몇 개의 회사를 세웠다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회사들이 사실상 최순실의 자금세탁 용도가 아니었냐는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⁵⁾.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에서 최순실과 관계된 한국인 3명과 독일인 1명을 포함한 4명의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범죄수익 환수제도를 통한 수사

특검이 독일 검찰로부터 최순실의 자금 세탁 관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만큼, 특검이 삼성과 관련된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한 액수를 넘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 일가의 숨겨 놓은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은 현행 범죄수익은

5) 2016. 12. 14.자 이데일리 안민석"최순실 독일서 자금세탁, 수천억대 추정"

4. 소 결

나라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국가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실세가 공모하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장래에 이러한 국가적인 엄청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의 독일에서의 자금세탁 혐의가 일부 인정 된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에 대한 나머지 자금세탁 혐의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어 최순실이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V. 우병우 전민정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

1.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수사 및 혐의

특검은 우병우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검수사를 통해 나타난 우병우의 혐의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2016. 3월~6월 경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6명을 산하단체 등으로 내려보내는 등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점, ②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른바 ‘좌파 성향’으로 낙인찍은 CJ 계열사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공

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 퇴직시킨 점(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③ 2016. 10월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병우가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의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한 점(직무유기 혐의 적용), ④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적용), 2016. 12. 22.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2017. 1. 9.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⁶⁾(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적용), 이상입니다.

2.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검수사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으로 한정되므로, 우병우 개인 비위 등에 관한 혐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영장기각은 이 점과도 관련이 있으며, 같은 이유로 검찰은 우병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검개시 전 검찰의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황제수사’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비난 등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만약 향후 우병우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지난날과 똑같은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된다면 더 이상 검찰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라며, 그것만이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2017. 2. 22.자 일요경제 ‘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결국 법정서 진실 가리나

VI. 결 론

진실의 가장 힘겨운 적은 거짓(lie)이 아니라 신화(myth)라는 말이 있습니다⁷⁾. 헌정 질서 유린과 국정파탄을 통해 국민의 삶을 도탄으로 몰아넣은 박전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작정치를 통해 모은 추종자들에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모든 것이 의도된 불순세력에 의해 공작된 것임을 강변하며 거짓신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칼로 사람을 죽인 자가 내가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라고 하는 변명과도 같습니다.

이제 검찰이 신화를 걷어내고 거짓을 밝혀 진실을 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귀중

7) J.F.케네디는 1962. 06. 예일대 졸업식 연설에서, 진실의 가장 커다란 적은 계획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눈속임의 거짓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럴듯하며, 비현실적인 신화(The great-enemy of the truth is very often the lie - deliberate, contrived and dishonest but the myth-persistent, persuasive and unrealistic.)라는 말을 했습니다.